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.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248 조 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* 신탁업자명 : ㈜부산은행

*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758-6284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명칭 : 삼성배당플러스 30 증권투자신탁Ⅱ 제 2 호[채권혼합]

삼성배당플러스 30 증권투자신탁Ⅱ 제 2 호[채권혼합]A

삼성배당플러스 30 증권투자신탁Ⅱ 제 2 호[채권혼합]Ce

삼성배당플러스 30 증권투자신탁Ⅱ 제 2 호[채권혼합]C

나. 분류:증권집합(채권혼합)투자기구

다. 보관.관리기간 : 2012.01.18 ~ 2013.01.17 (결산)

라. 집합투자업자 : 삼성자산운용㈜

마. 투자매매업자.투자증개업자 :KTB 투자증권,NH 농협증권,SK 증권,대신증권,대우증권,동부증권,동양증권,리딩투자증권,부산은행, 삼성생명,삼성증권,신영증권,IBK 투자증권,외환은행,우리투자증권,하나대투증권 SC 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,HSBC 은행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변경내용	
		변 경 전	변 경 후
2012-10-15	제51조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(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(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)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성 명	주요 운용경력 및 기간
2012.02.20	말소	송진구	2010.07.07~2012.02.19
2012.02.20	신규	진성룡	-
2012.10.15	말소	진성룡	2012.02.20~2012.10.14
2012.10.15	신규	양병태	2012.10.14~현재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일 시	안 건	집합투자증권 총수	출석 의결권수	결의결과

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이해관계인		거래의 종류	자산의 종류	거래금액	적격여부
성명	관계				
해당사항 없음					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,교체,해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자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2008.09.01	안진회계법인	자동연장	100 억원미만 : 500,000 원 100 억원~500 억원 : 1,500,000 원 500 억원~2,000 억원 : 2,000,000 원 2,000 억원이상(1,000 억초과마다) : 500,000 원씩 증가 (상한 6,000,000 원)	서면계약

7.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•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: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: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: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: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: 하이자산운용(주)는 투자신탁재산에대한 “사전자산배분기준” 을 내규로 제정 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